

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1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2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	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가.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

⑥ 웹툰콘텐츠 구분 (㉠, ㉡)	⑦ 웹툰콘텐츠 명칭	⑧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	⑨ 세액공제 대상여부	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	⑪ 국가 보조금 등	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	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(⑩-⑪-⑫)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		. . . ~ . . .	여, 부				
계							

나. 공제금액

기업 구분	⑰ '26.1.1 이후 발생분	⑱ 공제율	⑲ 공제금액 (= ⑰ × ⑱)
중소기업		15%	
중견기업		10%	
일반기업		10%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"⑥ 웹툰콘텐츠 구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"㉠ 디지털만화, ㉡ 웹툰"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.
2. "⑦ 웹툰콘텐츠 명칭"란: 해당 웹툰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.
3. "⑧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"란: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.
4. "⑨ 세액공제 대상여부"란: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"여"에 표시하며,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"여"에 표시합니다.
 - 1)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
 - 2)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
5. "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10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,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.
 - 1) 광고 및 홍보비용, 기업업무추진비
 - 2) 「소득세법」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29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
6. "⑪ 국가 보조금 등"란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.
7. "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10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적습니다.